

# 1918년 제주도 법정사항일운동 관련 『형사사건부』 분석

한 금 순 \*

## • 목 차 •

- I. 서 론
- II. 조선총독부 재판소 『형사사건부』의 구성
  - 1. 조선총독부 재판소 『형사사건부』의 양식
  - 2. 조선총독부 재판소 『형사사건부』의 구성
- III.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의 『형사사건부』 기록
  - 1.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의 『형사사건부』 기록
  - 2.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
  - 3.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의 인적사항
- IV. 결 론
  - 국문초록
  - Abstract
  - 참고문헌

---

\*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I. 서론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형사사건부』는 1918년 조선총독부 재판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의 기록문서로 법정사 항일운동을 형사사건으로 접수하는 것에서부터 공판과 감형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영구보존문서로 있다.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일제가 법정사 항일운동을 심각한 시국사안으로 인식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제주도에는 1912년 4월 1일자로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검사분국이 설치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검거된 현행범 44명은 제주지청 검사분국과 동급기관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에서 사건 처리되었다. 지금까지는 본 『형사사건부』가 1918년 조선총독부 재판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의 기록문서라는 점만으로 목포지청 검사분국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는 정보를 확인하는 정도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접수구별 발각원인’ 항목에서 “직수(直受)와 인지(認知)”라는 기록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사건 발생 장소가 제주도라면 원칙적으로 제주지청 검사분국에서 조사하고 기소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 기록의 생산 기관인 목포지청 검사분국에서 “직수(直受)와 인지(認知)”사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뜻이었다. “직수(直受)”는 경찰의 수사단계를 빼트리고 검찰단계에서 바로 수사하였다는 뜻이고 “인지(認知)”는 고소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하는 사건이라는 뜻이다. 법정사 항일운동 거사 당일 서귀포 경찰관 주재소 순사들이 출동하였으므로 이들 순사들이 직접 인지한 사건인 것이다. 10월 7일 발생한 사건을 3일 뒤인 10월 10일에 목포지청 검사분국에서 접수하였다. 현행범 44명을 경찰의 수사 없이 서둘러 목포로 이송하여 검찰단계에서 수사하였다는 점 등은 일제가 법정사 항

일운동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국권회복과 일본인 축출을 목표로 내건 법정사 항일운동이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제주도내의 파급 확산을 우려하였음이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본 『형사사건부』는 1994년에야 발굴되어 법정사 항일운동을 항일운동으로 재조명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문서이다. 『형사사건부』가 발굴되기 이전의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은 일제 당국의 의도에 의해 보천교도들의 흑세무민의 난동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일제 당국이 만들어낸 법정 문서인 『형사사건부』는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들에게 소요 및 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주도자인 김연일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등으로 1919년 삼일운동 참여자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는 등으로 참여자들의 거사가 항일운동임을 일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기록해 놓고 있다. 게다가 본 연구는 『형사사건부』의 양식 해설을 통해 법률적 용어의 의미를 실었다. 이를 통해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일제의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형사사건부』는 법정사 항일운동 현장에서 그리고 사후 조사를 통해 검거한 66명을 대상으로 한 기록이다. 『형사사건부』에는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의 성명과 주소 나이 직업 등의 인적사항과 사건처리 일자를 비롯하여 죄명, 형량, 형 집행 여부와 감형 등 형사재판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본고는 『형사사건부』 기록을 통해 법률적 의미를 파악하려는 의도로 양식에 기록된 각 항목의 내용을 정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형사사건부』의 인쇄된 양식 순서를 따라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선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에 있어서 각 인물별, 사건 처리 과정별, 형량별, 감형별 등으로 차후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서 기타 법정사 관련 문서들과

의 비교 연구에 기초 자료로서 비교되고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필자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이 미흡하여 본고를 기준으로 법 전문가의 추후 연구가 더욱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조선총독부 재판소 『형사사건부』의 구성

### 1. 조선총독부 재판소 『형사사건부』 양식

『형사사건부』는 사건 처리 일자에서 공판, 감형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재판의 처리 과정을 기록하는 법정문서이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형사사건부』 양식은 한자로 양식이 인쇄되어 있고 공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어 있으나, 필자는 읽기 쉽게 하기 위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도록 표를 다시 정리하였다.

< 표1. 조선총독부 재판소 『형사사건부』 양식 >

刑 事 事 件 簿	進 行 番 號		刑 第 號	
	接 手		月 日	
	主 任 檢 事			
	接受區別 現行, 非現行 發覺 原由	事件 標目	現 非	
	被告人 本籍 住所, 族稱, 職業 氏名, 年齡			
	句留		年 月 日 檢·豫·公	
釋放		年 月 日		

	保釋 責付	執行		年 月 日 豫·公·保·責
		取消		年 月 日
	檢事	起訴		年 月 日 豫·公
		不起訴		年 月 日
		移送		年 月 日
	豫審	終結		年 月 日
		抗告	申立	年 月 日
			結果	年 月 日
		公判 送致		年 月 日
	朝鮮總督府裁判所	公判	判決	
罪名 及 判決要旨				
故障		年 月 日		
判決 確定		年 月 日		
執行 放免 指揮		年 月 日 執行·放免		
上訴 結果簿 番號		第 號		
備考				

## 2. 조선총독부 재판소 『형사사건부』의 구성

『형사사건부』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에 필요하여 필자가 임의로 항목 번호를 매기고 전문가<sup>1)</sup>의 도움을 받아 해설을 덧붙여 놓았다.

1) 법률 용어를 해석하고 형사재판의 절차에 대한 설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강문혁의 도움이다.

< 표2. 조선총독부 재판소 『형사사건부』 양식 해설 >

조선총독부 재판소 『형사사건부』 양식				해설	
刑 事 事 件 簿	①	進 行 番 號	刑 第 號	형사사건 번호	
	②	接 手	月 日	사건접수 일자	
	③	主 任 檢 事		담당 검사	
	④	接受區別 現行, 非現行 發覺原由	事件 標目  現 非	접수 구별· 현행, 비현 행·발각 원 인·사건 표 제	
	⑤	被告人 本籍 住所, 族稱, 職業 氏名, 年齡		피 고 인 의 인적 사항	
	⑥	句留	年 月 日 檢·豫·公	구속 일자 및 풀차	
	⑦	釋放	年 月 日	석방 일자	
	⑧	保釋 責付	執行 取消 年 月 日 豫·公·保· 責	보석 여부 와 일자	
	⑨	檢事	起訴 不起訴 移送 年 月 日 豫·公 年 月 日 年 月 日	검사의 기 소 불기소 이송 처분 과 일자	
	朝 鮮 總 督 府 裁 判 所	⑩	豫審	終結	年 月 日
抗告				申 立	年 月 日
			結 果	年 月 日	
公判 送致			年 月 日		
⑪		公判	判決	年 月 日 對·闕	판결 선고 일과 재판 참석 여부
			罪名 及判 決 要旨		죄명과 판결 요지
⑫	故障	年 月 日	판결에 불 복하는신청		

⑬	判決 確定	年 月 日	판결 확정 일
⑭	執行 放免 指揮	年 月 日 執行・放免	집행과 방 면 지휘 사 항
⑮	上訴 結果簿 番號	第 號	상소 기록
⑯	備考		감형 등 기타 사항

- ① 진행 번호 : 해당 형사 사건의 번호.
- ② 접수 : 사건을 접수한 일자.
- ③ 주임 검사 : 검사 이름.
- ④ 접수구별 - 현행, 비현행·발각 원인·사건 표제 : 현행범인지 비현행범인지의 여부와 인지(認知)와 고소(告訴)의 여부, 그리고 경찰 송치 사건인지 검찰 직수(直受) 사건인지의 여부 및 사건의 표제.
- 형사사건은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으로 나뉜다. 인지사건은 수사기관(경찰 혹은 검찰)이 직접 인지를 해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고, 고소사건은 고소인의 고소를 원인으로 수사가 시작된다. 직수사건은 흔히 검찰직수 사건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인지 또는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수사절차가 시작되는데, 검찰 직수사건은 경찰단계가 아닌 검찰단계에서 바로 수사절차가 시작된 사건을 말한다.<sup>2)</sup>
- ⑤ 피고인 본적 주소, 족칭(族稱), 직업, 씨명, 연령 : 피고인의 인적 사항.
- ⑥ 구류(拘留)<sup>3)</sup> : 구류(拘留)는 오늘날의 구속을 뜻하는 말로 형벌이

2) 도움말 : 강문혁.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며, 형이 확정되면 구금 일수를 계산하여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음 국어사전) ; (拘留こうりゅう: [名] (スル)裁判所または裁判官が、被疑者・被告人の逃亡または罪証の隠滅を防止するため、これを拘禁する強制

아니고 구치시켜 놓는 것을 말함. 일자와 검·예·공(檢·豫·公)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검(檢)은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해서 구속되었다는 의미, 예(豫)는 예심과정에서, 공(公)은 검찰 단계에서는 구속되지 않았다가 검사가 기소한 후 공판절차에서 구속되었다는 의미이다.<sup>4)</sup>

- ⑦ 석방 : 석방 일자.
- ⑧ 보석, 책부(責付)<sup>5)</sup> : 보석 여부와 구류(勾留: 형벌이 아니고 구치시켜 놓음) 집행 여부.
- ⑨ 검사 - 기소·불기소·이송 :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 처리 상황과 다른 검사로 이송했는지의 여부.
- ⑩ 예심(豫審)<sup>6)</sup> - 종결·항고(신청, 결과)·공판송치 : 기소한 피고인을 공판에 붙일지 여부.
- ⑪ 공판 - 판결·죄명 및 판결 요지 : 공판에 따른 판결 선고일과 대석 필석 재판 여부 및 죄명과 판결 요지.
- ⑫ 고장(故障) : 판결에 불복하는 신청.

---

處分. : 재판소 또는 재판관이, 피의자·피고인의 도망 또는 죄증(罪證)의 은멸(隱滅)을 방지하기 위해, 구금하는 강제처분. (<http://dic.yahoo.co.jp>).

4) 도움말 : 강문혁.

5) 책부(責付)는 일본의 구 형사소송법에서 재판소가 피고인을 친족 등에게 맡기고, 구류(勾留: 형벌이 아니고 구치시켜 놓음) 집행을 정지한 제도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친족 보호단체 등과의 위탁에 의한 구류 집행 정지에 해당한다. (責付 : [法]責付せきふ : 旧刑事訴訟法で、裁判所が被告人を親族などに預け、勾留(こうりゅう)の執行を停止した制度。現行刑事訴訟法の親族・保護団体などへの委託による勾留の執行停止に相当する. (<http://dic.yahoo.co.jp>)).

6) 예심은 구 형사소송법에서 인정되던 제도로 공소(公訴) 제기 후, 피고 사건을 공판에 붙여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아울러 공판에서 신문하기 어려운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절차로 재판관의 권한에 속해 있었다. (豫審 : [法]予審よしん; 旧きゅう刑事けいじ訴訟法そしょうほうのもとで裁判官さいばんかんが起訴きそされた被告人ひこくにんに對たいして公判こうほんに付ふすべきか否いなかを決定けっていするために行おこなう手續てつづき. (<http://dic.yahoo.co.jp>)).

⑬ 판결 확정 : 판결 확정 일자 기록.

형사소송에서 1심 판결 선고 후 검사나 피고인이 일주일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sup>7)</sup>

⑭ 집행 방면 지휘 : 집행과 방면 일자.

판결이 확정되고 난 후 피고인이 석방되던지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던지 집행을 검사가 지휘한다.<sup>8)</sup>

⑮ 상소 결과부 번호 : 상소에 따른 기록.

⑯ 비고 : 감형에 대한 사항 또는 심리 변동 사항 등 기록.

### III.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의 『형사사건부』 기록

#### 1.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의 『형사사건부』 기록 개괄

『형사사건부』는 1918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의 기록문서로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66명에 대한 기록이다. 인쇄된 양식에 수기(手記)로 해당 사항을 기록하였다. 『형사사건부』 표지는 『대정 7년도 형사사건부(大正 七年度 刑事事件簿)』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에도 1912년 조선총독부령 제26호에 의해 마련된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검사분국이 있었다. 게다가 목포지청은 제주지청과 함께 광주지방법원 관할의 동급기관이었다. 동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들을 목포지청의 형사사건으로 접수시켰다.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특성 때문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제주도 사회와 차단시켜야

7) 도움말 : 강문혁.

8) 도움말 : 강문혁.

할 이유로 목포지청으로 보내었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우선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형사사건부』에 기록된 해당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진행 번호 : 해당 사건의 번호로, 형(刑) 제1122호와 형(刑) 제1251호 두 개의 번호로 나뉘어 있다.

② 접수 : 사건을 접수한 일자인데 10월 10일과 11월 6일, 11월 26일 세 차례에 걸친 접수 일자가 기록되어 있다. 연도는 이 문서 전체가 대정 7년(1918년)의 기록임이 표지에 쓰여 있어서 날짜만 기록하고 있다.

③ 주임 검사 : 호리에(堀江)이다.

④ 접수구별 - 현행, 비현행·발각 원인·사건 표제 : 현행범이 44명 비현행범이 22명이다. 인쇄된 현(現)과 비(非) 중에서 해당되는 글자를 남기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현행범은 비(非)를 지웠다. 발각 원인은 직수(直受)와 제주(濟州) 그리고 인지(認知)라고 수기(手記)해 놓고 있다. 직수(直受)는 검찰단계에서 바로 수사 절차가 시작된 사건을 말한다. 인지(認知)는 고소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경찰 혹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사건 표제는 모두 소요(騷擾)이다.

⑤ 피고인 본적 주소, 족칭(族稱), 직업, 씨명, 연령 : 주소는 먼 리까지 기록하였다. 직업이 기록되고 있으며 법정사를 주소지로 기록한 사람들은 무직으로 표기하였다. 성명은 이명도 기록하고 있다. 연령은 공란인 사람 혹은 연령 미상(不詳) 등으로 기록된 사람도 있다.

⑥ 구류(拘留) 일자와 검·예·공(檢·豫·公) : 오늘날의 구속 상황을 말한다. 구속은 모두 30명이다. 검·예·공(檢·豫·公) 중 해당되는 글자를 남기는 방법을 쓰고 있다. 검(檢)은 29명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한 경우, 공(公)은 1명인데 검찰단계에서는 구속되지 않았다가 검사가 기소한 후 공판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이다.

- ⑦ 석방 일자 : 기재 사항이 없다.
- ⑧ 보석, 책부(責付) : 기재 사항이 없다. 보석 여부와 구류(拘留: 형벌이 아니고 구치시켜 놓음) 집행 여부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뜻이다.
- ⑨ 검사 - 기소·불기소·이송 : 기소는 48명, 불기소는 18명이다.
- ⑩ 예심(豫審) - 종결·향고(신청, 결과)·공판송치 : 기재 사항이 없다.
- ⑪ 공판 - 판결 일자·죄명 및 판결 요지 : 판결 일자는 1919년(대정 8년) 2월 4일 한 번뿐이며, 대석과 궤석으로 표기되어 있다. 궤석 5명, 대석 41명으로 모두 46명이 재판을 받고 판결이 내려졌다. 죄명은 모두 소요 및 보안법 위반이며 1명만이 총포화약 취급령 위반이 추가되었다. 판결 요지는 징역 10년에서 벌금 30원형까지, 그리고 20명은 공판으로 되어있다.
- ⑫ 고장(故障) : 2명이 1923년 2월 20일 판결 불복 신청하였다.
- ⑬ 판결 확정 : 42명이 판결확정을 받았다. 판결확정 일자가 없는 사람이 4명이다.
- ⑭ 집행 방안 지휘 : 형을 선고 받은 46명 중 28명의 형이 집행되었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 중 3명과 벌금형을 받은 15명, 모두 18명이 집행란이 공란이다.
- ⑮ 상소 결과부 번호 : 1명이 기록되어 있다. 제5호로 기록이 있으나 비고란에 공소(控訴)취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공소(控訴)는 항소의 옛날 용어이다. 상소하였다가 취소하였다는 뜻이다.
- ⑯ 비고 : 11명에 대한 감형 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2명의 구속 중 사망, 공소(控訴) 취하 1명에 대한 기록이 있다. 또한 형(刑) 제1251호인 22명은 형(刑) 제1122호와 합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 2.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

앞에서는 전체적인 기록사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형사

사건부』의 기록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사건접수에서부터 기소까지의 과정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조선총독부 재판소의 사건 접수에서부터 기소까지의 과정을 먼저 살펴도록 하겠다.

#### (1) 사건 접수

사건접수에 관한 사항은 ①진행 번호와 ②접수, ③주임검사 ④접수구별·현행, 비현행·발각 원인·사건 표제 항목으로 알 수 있다.

< 표3. 사건 접수 현황 >

① 진행호	② 사건 접수일		③주임 검사	④ 접수구별·현행, 비현행·발각 원인·사건 표제			
	일자	인원		현행, 비현행	발각 원인	사건 표제	
刑 제1122호	1918. 10. 10	41명	호리에 (堀江)	현행	44명	直受 認知	소요
	1918. 11. 6	3명					
刑 제1251호	1918. 11. 26	22명		비현행	22명	濟州 認知	

① 진행 번호는 해당 형사 사건의 번호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긴 사건을 접수한 후에 검찰 자체에서 사건 번호를 매긴다.<sup>9)</sup> 법정사 항일운동은 두 개의 번호로 접수되었다. 현행범들은 형사사건 제1122호로 1918년 10월 10일 과 11월 6일에 걸쳐 접수되었고, 비현행범들은 형사사건 제1251호로 1918년 11월 26일 접수되었다. 제1251호는 제1122호로 합하여 처리된 것으로 비고란에 명기되어 있다. 형(刑) 제1122호

9) 도움말 : 강문혁.

로 접수된 사람은 44명, 형(刑) 제1251호는 22명이다. 두 개의 번호 사건은 동일 사건이라고 보고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 번호에 해당하는 인물을 보려면 표5에서 현행과 비현행에 해당되는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②접수는 사건을 접수한 일자를 기록하고 있다. 접수날짜는 검찰청에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접수한 날짜로<sup>10)</sup> 사건 접수는 세 차례에 걸쳐 있었다. 1918년 10월 10일과 11월 6일, 11월 26일이다. 현행범 44명은 10월 10일 접수된 41명과 11월 6일에 접수된 3명으로 모두 형(刑) 제1122호로 처리되었고, 비현행범 22명은 11월 26일에 접수되고 형(刑) 제1251호로 접수되었다가 나중에 형(刑) 제1122호로 합해졌다. 위의 표3에서 진행번호와 사건접수일과 현행 여부를 같이 비교해 놓았다.

③주임검사는 호리에(堀江)이다.

④접수구별 - (가)현행, 비현행 · (나)발각 원인 · (다)사건 표제 : (가) 현행범인지 비현행범인지의 여부와 (나)발각원인은 인지(認知)와 고소(告訴)의 여부, 경찰 송치 사건인지 검찰 직수(直受) 사건인지의 여부, 그리고 (다)사건의 표제를 나타내는 항목이다.

(가)현행, 비현행 : 현행범이 44명 비현행범이 22명이다. 현행범은 형(刑) 제1122호로 비현행범은 형(刑) 제 1251호로 접수되었다.

(나)발각 원인 : 직수(直受), 제주(濟州), 인지(認知)라고 수기(手記)해 놓고 있다. 직수(直受)사건은 흔히 검찰직수 사건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인지 또는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수사절차가 시작되는데, 검찰 직수사건은 경찰단계가 아닌 검찰단계에서 바로 수사절차가 시작된 사건을 말한다.<sup>11)</sup> 이는 경찰의 수사에 의한 사건 조사 단계를 빼트린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인지(認知)

10) 도움말 : 강문혁.

11) 도움말 : 강문혁.

는 고소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인 경찰 혹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을 말한다.<sup>12)</sup>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형사사건부』는 현행범은 모두 직수(直受)와 인지(認知), 비현행범은 제주(濟州)와 인지(認知)라고 수기(手記)했다. 인지(認知)가 쓰여 있는 것은 고소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해서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범은 모두 직수이다. 이는 경찰에 의한 사건조사 후 검찰로 송치하는 절차를 빼 트리고 바로 검찰단계에서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우선 날짜 상으로 10월 7일 법정사 항일운동이 있었고 서귀포 경찰관 주재소에서 출동한 순사들이 거사를 제압하였다. 그리고 현행범이 44명인데 이들 44명을 체포 3일 후인 10월 10일에 형사사건으로 직수하였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단계의 수사에 맡겨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본 『형사사건부』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의 문건이다. 당시 제주도에도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검사분국이 1912년 4월 1일자로 설치되어있었다.<sup>13)</sup>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검사분국은 동급기관이다. 사건 발생 장소가 제주도라면 원칙적으로 제주지청 검사분국에서 조사하고 기소할 것이다.<sup>14)</sup> 그런데 제주에서 체포된 피의자들을 특별히 목포로 이송하여 처리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제가 법정사 항일운동을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였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범 44명은 모두 목포지청에서 처리하였다. 국권회복을 목표로 내건 항일 독립운동이라

12) 도움말 : 강문혁.

13) 제주지방법원 연혁 :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 1912. 4. 1. 제령 제 4 호 (1912.3.18) 총독부령 제26호 (1912.03.19.)”  
([http://jeju.scourt.go.kr/jeju/intro/intro\\_02/intro\\_02\\_01/index.html](http://jeju.scourt.go.kr/jeju/intro/intro_02/intro_02_01/index.html)).

14) 도움말 : 강문혁.

는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제주도내의 과급 확산을 우려하여 서둘러 현행범 44명을 목포로 이송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범은 모두 '직수(直受)와 인지(認知)'로 1918년 10월 7일 거사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으로 44명 전원이 목포로 이송되어 경찰 조사 단계를 빼트리고 직접 검찰단계에서 취급되었다. 비현행범은 '제주(濟州)와 인지(認知)'라고 수기되어 있다. 비현행범은 1918년 11월 26일에 접수된다. 이는 사건 발생 50여일 후로 추가 조사로 잡혀간 사람들로써 현행범들보다 참여정도가 미미한 사람들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필자는 현행범의 직수(直受)는 이 문서가 목포지청 검사분국의 문서이므로 목포지청 검사분국에서 직접했다는 뜻이고 일 것이고, 비현행범의 제주(濟州)는 목포로 이송하지 않고 제주지청에서 취급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추후 전문 법학자의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상 법정사 항일운동은 현행범은 '직수(直受)와 인지(認知)'로 경찰의 수사단계를 빼트리고 바로 목포지청 검사분국에서 검찰단계의 수사로 취급되었고, 비현행범은 '제주(濟州)와 인지(認知)'로 제주지청에서 처리되었음을 살폈다. 이는 국권회복을 목표로 내건 법정사 항일운동의 특징으로 인해 제주도내의 과급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현행범 44명 전원을 서둘러 목포로 이송한 것으로 보인다.

(다)사건 표제 : 모두 소요(騷擾)이다.

## (2) 구속

구속은 항목 ⑥의 구류(句留)이다. 구류(句留)는 오늘날의 구속을 말한다.

구속은 30명 불구속 36명이다.

< 표4. 구속·불구속 인원 >

구분		인원	계
구속	현행	刑 제 1122호	30명
	비현행	刑 제 1251호	0명
불구속	현행	刑 제 1122호	14명
	비현행	刑 제 1251호	22명
			36명

구속자는 현행범 44명 중에 30명이고, 14명은 불구속이다. 비현행범 22명은 모두 불구속되어, 불구속자는 36명이다.

현행범 중 1918년 10월 21일 22명, 11월 1일 5명, 11월 6일 2명, 11월 26일 1명이 구속되었다. 불구속은 현행범 중 10월 21일의 13명, 11월 6일의 1명과 비현행범 22명이 불구속이다. 표5로 구속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 표5. 구속 현황 >

④ 현행, 비현행	② 사건 접수일		⑥ 구속·불구속		
	일자	인원	구속 일자	구속	불구속
현행	1918년 10월 10일	41명	1918년 10월 21일	22명	13명
			1918년 11월 1일	5명	0명
			1918년 11월 26일	1명	0명
	1918년 11월 6일	3명	1918년 11월 6일	2명	1명
비현행	1918년 11월 26일	22명			22명
총 계		66명		30명	36명

『형사사건부』 양식 중 구속된 30명은 검(檢)에 29명, 공(公)에 1명이 표시되어 있다. 검(檢)은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한 경우이고, 공(公)은 검찰단계에서는 구속되지 않았다가 검사가 기소한 후 공판절차에서 구속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sup>15)</sup> 공(公)에 해당하는 1

15) 도움말 : 강문혁.

명은 방동화이다. 방동화는 현행범으로 1918년 10월 10일 접수되었고 11월 11일 기소되고 11월 26일 구속되었고 현행범으로 분류되었다. 방동화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좌대장으로 거사 현장에서는 피신하였다가 검찰단계에서 구속되지 않았다가 기소가 먼저 되고 공판절차에서 구속되었다. 실제적으로 거사 이후 한두 달 여 도피생활을 하다가 붙잡혀 간 것으로 유족이 증언하고 있다.

구속자와 불구속자 성명<sup>16)</sup>은 다음의 표와 같다. 연도는 모두 1918년이다. 표를 만들기 위해 연도는 생략하였다.

< 표6. 구속·불구속자 성명 >

접수		구속			불구속	
구분	인원	구속일자	성명	인원	성명	인원
현행	41명	10. 21	박주석 김삼만 양남구 장임호 문남규 이승빈 김무석 오병윤 문남은 이종창 김성수 김상연 김두삼 이달생 강기추 고용석 조계성 오인석 현재천 최신일 이춘삼 강춘근	22명	김연일 김윤석 강 익 문남진 강영준 이무현 이세인 최문수 강창규 강수오 정구용 강민수 김용총	13명
		11. 1	김봉화 김명돈 김기수 최태우 강봉환	5명	공란	0명
		11. 26	방동화	1명	공란	0명
	3명	11. 6	이윤평 김인수	2명	한윤옥	1명
소계	44명			30명		14명
비현행	22명	공란	공란	0명	양 봉 김항울 원인수 김인송 지축생 강두옥 현무생 지갑생 오인식 강순봉	22명

16) 이하 본고의 성명 기록 순서는 모두 『형사사건부』에 기재된 순서이다.

					강태하 송을생 김창호 이원영 이봉규 박경흠 이지춘 원성춘 김병일 김인호 고기동 조인혁	
총 계	66명			30명		36명

### (3) 기소

기소는 48명 불기소는 18명이다.

< 표7. 기소·불기소 인원 >

구분		인원	계
기소	현행	刑 제1122호	33명
	비현행	刑 제1251호	15명
불기소	현행	刑 제1122호	11명
	비현행	刑 제1251호	7명

현행범 44명 중 기소자는 33명, 불기소자 11명이다. 비현행범 22명 중 기소자 15명, 불기소자 7명이다.

먼저 현행범으로 처리된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행범 중 기소 해당자는 모두 11월 11일 기소되었다. 접수부터 살펴보면 현행범은 (1) 10월 10일과 (2) 11월 6일 접수되었다. (1) 10월 10일 접수된 41명 중 28명 구속되었는데 (가) 10월 21일 구속 22명=기소 19명+불기소 3명, (나) 11월 1일 구속 5명=기소 5명, (다) 11월 26일 구속 1명=기소 1명이다. 10월 10일 접수된 41명 중 불구속은 13명=기소 6명+불기소 7명이다. (2) 11월 6일 접수된 3명 은 구속 2명=기소 2명, 불구속 1명=불기소 1명이다.

< 표8. 사건 접수에서 구속·기소까지 I (현행) >

접수		구속 / 기소·불기소				불구속 / 기소·불기소			
현행		구속		기소·불기소		불구속	기소·불기소		
일자 <sup>17)</sup>	인원	일자	인원	구분	인원	인원	구분	인원	
10월 10일	41명	10월 21일	22명	기소	19명	13명	기소	6명	
				불기소	3명		불기소	7명	
		11월 1일	5명	기소	5명	공란	공란	공란	
		11월 26일	1명	기소	1명	공란	공란	공란	
11월 6일	3명	11월 6일	2명	기소	2명	1명	불기소	1명	

비현행범은 11월 27일 기소되었다. 접수부터 살펴보면 비현행범은 11월 26일 22명 접수되었다. 이들은 22명은 모두 불구속=기소 15명+ 불기소 7명이다.

< 표9. 사건 접수에서 구속·기소까지 II (비현행) >

접수		구속 / 기소·불기소				불구속 / 기소·불기소		
비현행		구속		기소·불기소		불구속	기소·불기소	
일자	인원	일자	인원	구분	인원	인원	구분	인원
11월 26일	22명	구속자 없음	기소자 없음			22명	기소	15명
							불기소	7명

기소자와 불기소자 명단을 다음의 표로 만들었다.

17) 연도는 1918년이다. 표 그리기 위해 연도는 생략하였다.

< 표10. 기소자 현황 >

구분			인원	성명	비고
현행	구속	기소	27명	박주석 문남규 이승빈 김무석 오병윤 문남은 이종창 김성수 김상언 김두삼 이달생 김삼만 고용석 조계성 최신일 이춘삼 방동화 이운평 김인수 양남구 장임호 김봉화 김명돈 김기수 최태우 강봉환	징역형
				강춘근	
	불구속	기소	6명	김연일 강창규 정구용 강민수 김용충	징역형
강수오				사망 <sup>18)</sup>	
비현행	불구속	기소	15명	양봉 강순봉 강대하 송을생 김 창호 이원영 이봉규 김항률 원 인수 김인송 지축생 강두옥 현 무생 지갑생 오인석	벌금형
기소자 총계			48명		

< 표11. 불기소자 현황 >

구분			인원	성명	비고
현행	구속	불기소	3명	강기추 오인석 현재천	방면 <sup>19)</sup> 증거 불충분
	불구속	불기소	8명	김윤석 강 익 문남진 강영준 이무현 이세인 최문순 한윤옥	형 없음 증거 불충분
비현행	불구속	불기소	7명	박경흠 이자춘 원성춘 김병일 김인호 고기동 조인혁	형 없음 증거 불충분
불기소자 총계			18명		

- 18) 강수오는 불구속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인적사항 란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유독 '강창규의 동생'이라는 점을 명기해 놓았다. 강창규는 선봉대장으로 실제적으로 거사를 이끌었던 주도자이나 1922년 12월 27일에야 체포되었다. 불구속 상태이면서 사망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강수오는 강창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19) 오인석은 1918년 10월 28일에, 강기추와 현재천은 11월 9일에 방면되었다.

이상 사건 접수현황에서부터 구속, 기소까지를 살펴보았다. 현행범으로 44명 비현행범으로 22명으로 66명이 검거되었다. 구속 30명 불구속 36명이며, 기소 48명 불기소 18명으로 처리되었다.

## 2) 공판에서부터 감형까지의 과정

### (1) 공판

공판은 1919년(대정 8년) 2월 4일 한 번으로 종결되었다. 기소자 48명 중 대석 41명, 궐석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명은 재판 전 사망하여 공판에서 제외되었다.

< 표12. 공판 현황 >

구속		기소		공판		판결		비고
구분	인원	구분	인원	구분	인원	구분	인원	
구속	27명	기소	48명	대석	41명	징역형	26명	벌금 30원
						벌금형	15명	
불구속	21명	기소	48명	궐석	5명	징역형	5명	검거 되지 않음(김연일 강창규 정구용 강민수 김용충)
					2명	형 없음	2명	
불구속	15명	불기소	18명	궐석	18명	형 없음	18명	
구속	3명							
				공판 대상자	46명	형 선고자	46명	

구속 기소된 27명은 26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1명은 구속 중 사망하였다. 불구속 기소 21명 중 징역형 5명 사망 1명이고 15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구속 불기소 3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방면되었다.

불구속 불기소 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형이 없다.

(2) 판결

공판 대상자 46명이 판결을 받았다. 죄명은 모두 소요 및 보안법 위반이며 이춘삼 한 명만이 총포화약 취급령 위반이 추가되었다.<sup>20)</sup> 판결 요지는 징역 10년 1명, 8년 1명, 7년 1명, 6년 2명, 4년 4명, 3년 4명, 2년 4명, 1년 6월 2명, 1년 11명, 6월 1명, 벌금 30원 15명으로 모두 46명이다. 형이 없는 사람은 불기소자 18명과 기소되었으나 사망한 2명을 포함하여 20명이다.

< 표13. 판결 현황 I (형을 받은 사람) >

구분	형량	인원	성명
결석 판결 (5명)	징역 10년	1명	김연일
	징역 8년	1명	강창규
	징역 3년	1명	정구용
	징역 1년 6월	2명	강민수 김용충
대석 판결 (41명)	징역 7년	1명	박주석
	징역 6년	2명	김상언 방동화
	징역 4년	4명	최태유 장임호 김삼만 양남구
	징역 3년	3명	김인수 고용석 문남규
	징역 2년	4명	강봉환 김봉화 조계성 김무석
	징역 1년	11명	김기수 문남은 최신일 김명돈 이종창 이윤평 이달생 이승빈 김두삼 오병운 김성수
	징역 6월	1명	이춘삼
	벌금 30원	15명	강두옥 원인수 이원영 송을생 지축생 이봉규 김인승 김창호 강순봉 현술생 지갑생 김항을 양봉 오인식 강태하
<b>형을 받은 자</b>	<b>46명</b>		

20) 죄명 및 적용 법률은 『강창규 가출옥 서류』와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강창규는 상해죄와 방화죄가 추가되었음이 기록되는 등 『형사 사건부』보다 더 자세하다.

< 표14. 판결 현황 II (형을 받지 않은 사람) >

구분	형량	인원	성명
불기소자	없음	18명	강기추 오인석 현재천 김윤석 강 익 문남진 강영준 이무현 이세인 최문수 한윤옥 박경흠 이자춘 원성춘 김병일 김인호 고기동 조인혁
사망	없음	2명	강수오 강춘근
형을 받지 않은 자		20명	

(3) 고장(故障)

『형사사건부』 양식의 고장(故障)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신청을 말한다. 정구용과 김용충 2명이 1923년 2월 20일 신청하였다. 정구용의 『형사사건부』 상의 고장(故障) 기록은 필자가 발굴한 『정구용 재소자 신분카드』의 기록과 동일하다. 『정구용 재소자 신분카드』에 의하면 정구용은 1923년 2월 13일에야 체포되었다. 1923년 2월 19일 구치감에 입감되었고 궤석 판결이 고지된다. 다음날 2월 20일 대구복심 법원에 고장(故障)을 신청한다. 김용충도 신청을 하였으나 김용충에 대한 자료는 아직 발굴되지 않고 있어서 이후의 행적을 알 수 없다.

(4) 판결 확정

판결 받은 46명 중 42명이 판결확정을 받았다. 1919년 2월 4일에 36명, 1919년 2월 5일에 3명, 1919년 3월 1일에 1명, 1920년 4월 5일에 1명, 1923년 1월 4일에 1명이 판결 확정을 받았다. 형사소송에서 1심 판결 선고 후 검사나 피고인이 일주일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sup>21)</sup> 그러나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들은 1919년 2월 4일 재판 받고 대부분이 당일 판결확정을 받았다.

형을 받았으나 판결 확정 일자가 없는 사람은 정구용 김용충 강민수

21) 도움말 : 강문혁.

김기수 4명이다. 정구용은 항소하여 1923년 6월 29일 재심 판결을 받고 같은 날 6월 29일 판결확정 되었다. 김용충도 『형사사건부』에 정구용과 같은 1923년 2월 20일에 고장(故障) 신청을 해 놓고 있어서 정구용과 같은 시기에 체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김용충의 기록은 더 이상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강민수는 끝까지 체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필자가 발굴한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 의하면 1928년까지도 강민수를 아직도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판결 확정 일자가 없는 것이라고 짐작된다. 김기수는 판결 확정은 공판으로 되어 있지만 집행일자가 1919년 2월 4일로 되어 있어, 징역 1년의 형은 집행되었다고 보인다. 『형사사건부』에 판결 확정 일자가 없는 4명 중 정구용 김기수는 판결확정 일자를 밝혀내었고, 김용충과 강민수 2명은 판결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다.

< 표15. 판결확정 현황 >

일자	인원	성명	비고
1919년 2월 4일	36명	강두옥 강봉환 강순봉 강태하 고용석 김두삼 김명돈 김무석 김봉화 김삼만 김상언 김성수 김인송 김창호 김항를 문남규 문남은 박주석 방동화 송을생 양봉 오병윤 오인식 원인수 이달생 이봉규 이승빈 이원영 이윤평 이중창 이춘삼 조계성 지갑생 지족생 최신일 현무생	기소되어 형을 받은 사람들.
1919년 2월 5일	3명	양남구 장임호 최대우	
1919년 3월 1일	1명	김인수	
1920년 4월 5일	1명	김연일	1920년 3월 체포
1923년 1월 4일	1명	강창규	1922년 12월 27일 체포
<b>판결 확정자</b>	<b>42명</b>		『형사사건부』에 판결 확정일자 없는 사람은 4명(정구용 김용충 강민수 김기수). 정구용 김기수- 판결확정 일자

			를 밝혀냄. 김용충 강민수 2명은 판결 확정 여부 모름.
--	--	--	---------------------------------

(5) 형 집행

형을 선고 받은 46명 중 28명의 형이 집행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25명은 공판일인 1919년 2월 4일에 집행되었으며 1919년 3월 1일 김인수 1명, 1920년 4월 5일 김연일 1명, 1923년 1월 4일 강창규 1명이 집행되었다. 집행하지 못한 사람은 정구용, 김용충, 강민수 3명과 벌금형을 받은 15명으로 모두 18명이다. 정구용, 김용충, 강민수에 관해서는 바로 앞 항목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항소하거나 체포되지 않은 것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 표16. 형 집행 현황 >

집행 여부	인원	집행 일자	인원	비고
집행	28명	1919년 2월 4일	25명	강봉환 고용석 김기수 김두상 김명돈 김무석 김봉화 김삼만 김상언 김성수 문남규 문남은 박주석 방동화 양남구 오병윤 이달생 이승빈 이윤평 이종창 이춘삼 장임호 조계성 최신일 최대우
		1919년 3월 1일	1명	김인수
		1920년 4월 5일	1명	김연일
		1923년 1월 4일	1명	강창규
집행 공란	18명	공란	3명	정구용 김용충 강민수
		공란	15명	강두옥 강순봉 강태하 김인송 김창호 김항를 송을생 양 봉 오인식 원인수 이봉규 이원영 지갑생 지축생 현무생
총계	46명		46명	

(6) 상소

김인수가 상소했다가 취소하였다.

(7) 감형

감형은 비고란에 명기되어 있다. 11명에 대해서 1920년 칙령 제120조와 ‘칙지(勅旨)에 의해 특전(特典)으로’ 등에 의해 감형이 있었다. 감형은 형량이 징역 10년에서 3년까지의 경우는 원래 형량의 1/2을 감하였다. 그러나 형량이 징역 2년인 경우는 징역 1년 2월 23일로 감하였다. 이는 1/2 감형하였으나 감형할 당시 이미 2월 23일이 초과된 경우가 아닐까 짐작해 본다. 김무석과 조계성은 1918년 10월 21일 구속되었고, 강봉환은 1918년 11월 1일 구속되었다. 미결 구금일수 산입 제도<sup>22)</sup>에 의해 날짜를 계산해보면 김무석과 조계성이 복역한 1년 2월 23일은 1920년 1월 13일이 되고, 강봉환은 1920년 1월 22일이 된다. 1920년의 칙령 제120조가 언제부터 적용되었는지 등 칙령 제120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표17. 감형 현황 >

	성명	감형 내용	근거법령	원래 형량
1	김연일	대정 9년 칙령 제 120호에 의해 징역 5년으로 변경시킴	칙령 제 120호	징역 10년
2	박주석	대정 9년 칙령 제 120호에 의해 징역 3년 6월로 변경시킴	칙령 제 120호	징역 7년
3	김상언	대정 9년 칙령 제 120호 제6조에 근거해 特典으로써 그 형을 징역 3년으로 변경시킴	칙령 제 120호	징역 6년

22) ‘미결 구금일수 산입 제도’는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된 상태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되어 있었다면 이 구금 일자를 형 집행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결수 상태로 복역한 일수를 형기에 산입해서 그만큼 복역한 것으로 계산해 주는 제도이다.(도움말 : 강문혁).

4	방동화	대정 9년 칙령 제120호에 의해 징역 3년으로 변경시킴	칙령 제120호	징역 6년
5	양남구	勅旨에 의해 特典으로써 그 형을 징역 2년으로 변경시킴	勅旨	징역 4년
6	최태우	勅旨에 의해 特典으로써 그 형을 징역 2년으로 변경시킴	勅旨	징역 4년
7	고용석	대정 9년 칙령 제120호에 의해 징역 1년6월로 변경시킴	칙령 제120호	징역 3년
8	문남규	대정 9년 칙령 제120호에 의해 징역 1년 6월로 변경시킴	칙령 제120호	징역 3년
9	강봉환	대정 9년 칙령 제120호에 의해 징역 1년 2월 23일로 변경시킴	칙령 제120호	징역 2년
10	김무석	대정 9년 칙령 제120호에 의해 징역 1년 2월 23일로 변경시킴	칙령 제120호	징역 2년
11	조계성	대정 9년 칙령 제120호에 의해 징역 1년 2월 23일로 변경시킴	칙령 제120호	징역 2년

그러나 감형량이 반드시 실제 수감된 일수인 것은 아니다. 다른 자료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연일 가출옥 증표』와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 등에서 가출옥이 드러나고 있어 비교연구가 가능하다.<sup>23)</sup>

#### (8) 기타

비고란에는 강춘근과 강수오의 사망을 기록하였다. 강춘근은 1919년 1월 6일 구속 중인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강수오는 1918년 12월 27일에 사망하였다. 강수오의 인적 사항란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히 강창규의 동생임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아 주도자인 강창규가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수오에게 가혹 행위가 가해졌을 것이

23) 이에 대해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이 있다.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제주대학교 대학원, 2006), 68쪽.

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짐작된다. 또한 1918년 11월 26일에 형 제1251호로 접수되었던 22명이 '1122호와 합한다'라고 명기하였다.

< 표18. 비고 >

	성명	내 용	비고
1	양봉	1122호와 습한다. 대정 8년 徵第 17	별금형 선고자
2	김항을	1122호와 습한다. 대정 8년 徵第 36	
3	원인수	1122호와 습한다. 대정 8년 徵第 18	
4	김인송	1122호와 습한다. 대정 8년 徵第 19	
5	지축생	1122호와 습한다. 대정 8년 徵第 20	
6	강두옥	1122호와 습한다. 대정 8년 徵第 21	
7	현무생	1122호와 습한다. 대정 8년 徵第 61	
8	지갑생	1122호와 습한다. 대정 8년 徵第 62	
9	오인식	1122호와 습한다. 대정 8년 徵第 22	
10	강순봉	1122호와 습한다. 대정 8년 徵第 23	
11	강태하	1122호와 습한다. 대정 8년 徵第 24	
12	송을생	1122호와 습한다. 대정 8년 徵第 25	
13	김창호	1122호와 습한다. 대정 8년 徵第 26	
14	이원영	1122호와 습한다. 대정 8년 徵第 27	
15	이봉규	1122호와 습한다. 대정 8년 徵第 28	
16	박경흠	1122호와 습한다.	비현행 불구속 불기소
17	이자춘	1122호와 습한다.	
18	원성춘	1122호와 습한다.	
19	김병일	1122호와 습한다.	
20	김인호	1122호와 습한다.	
21	고기동	1122호와 습한다.	
22	조인혁	1122호와 습한다.	

### 3.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의 인적사항

다음은 『형사사건부』에 기록된 피고인 본적 주소, 족칭(族稱), 직업, 씨명, 연령에 관한 사항이다. 원래 『형사사건부』 양식 상으로는 ⑤항에 있는 것이다. 형사사건으로써 사건 접수에서부터 형 집행과 감형 등에 이르기까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 가는지를 일괄적으로 살펴려고 이 항목을 뒤에서 다루었다.

#### 1) 주소지별 분류

주소지 별로 보면 경상북도 영일군 출신 1명, 제주도 구우면 금악리 2명, 우면 법환리 1명과 서흥리 1명, 제주면 오등리 1명과 오라리 1명, 좌면 대포리 2명, 좌면 도순리 15명, 좌면 상예리 1명, 좌면 영남리 4명, 좌면 월평리 13명, 좌면 중문리 1명, 좌면 하원리 19명, 좌면 회수리 1명, 중면 덕수리 1, 중면 사계리 2명이다. 법정사가 위치한 도순리와 하원리 등이 포함된 좌면의 참여자가 56명으로 가장 많다.

< 표19. 주소지별 분류 >

면 명 <sup>24)</sup>	인 원	리 명	인 원	성 명	비고
경상북도 영일군	1명		1명	김인수	
구우면	2명	금악리	2명	강봉환 박주석	
우면	2명	법환리	1명	최문수	
		서흥리	1명	최태우	
제주면	2명	오등리	1명	강익	
		오라리	1명	강춘근	
좌면	56명	대포리	2명	김봉화 김윤석	
		도순리	15명	조인혁 문남규 문남은	왼쪽의 밑줄 친

				문남진 양남구 이윤평 이종창 방동화 <u>강민수</u> <u>장임호</u> 정구용 <u>김삼만</u> <u>김연일</u> 한윤옥 <u>김용충</u>	7명의 주소는 도순리 법정사 이다.
		상예리	1명	오인석	
		영남리	4명	김두삼 김항률 박경흠 이자춘	
		월평리	13명	강영준 김무석 김성수 김창호 김기수 송을생 이무현 이원영 조계성 최신일 현무생 강두옥 이봉규	
		중문리	1명	고용석	
		하원리	19명	원성춘 김병일 오인식 김인호 강기추 김상연 김인승 양봉 지갑생 오 병윤 원인수 고기동 이 달생 이승빈 이춘삼 강 태하 현재천 강순봉 지 축생	
		회수리	1명	이세인	
중면	3명	덕수리	1명	김명돈	
		사계리	2명	강창규 강수오	

## 2) 직업별 분류

직업별로는 법정사 주지 1명, 무직 4명(법정사 주소), 하남(下男) 1명, 일가 2명, 잡화직 1명, 혁화직(革靴職) 1명, 공란 4명, 농업 52명이다. 이 중 무직으로 기록된 강민수 장임호 정구용 김인수와 직업란이 공란인 김용충 방동화는 승려이며, 법정사를 주소지로 한 한윤옥은 하남(下男)으로 기록되었는데 사찰의 행자 소임, 김삼만은 일가(日稼)로 기록되었는데 사찰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불목하니 역을 맡았던 법정사 식구들이었다. 성명은 이명도 기록하고 있다. 연령도 기록되

24) 경상북도 영일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주도라서, 필자는 제주도는 생략하고 면 명만 적었다.

어 있는데 공란인 사람 혹은 연령 미상(不詳) 등으로 기록된 사람도 있다.

< 표20. 직업별 분류 >

직업	인원	성명	비고
주직	1명	김연일	법정사 주지
무직	4명	장임호	법정사 거주 승려
		정구용	
		강민수	
		김인수	
공란	4명	강창규	승려
		강수오	
		방동화	승려
		김용충	법정사 거주
일가	2명	김삼만	법정사 불목하니
		최태우	승려
하남	1명	한윤옥	법정사 행자
농업	52명	박주석 양남구 김봉화 김명돈 김기수 강봉환 문남규 이승빈 김무석 오병윤 문남은 이종창 김성수 김상언 김두상 이달생 강기추 고용석 조계성 오인석 현재천 최신일 이춘삼 강춘근 김윤석 강익 문남진 강영준 이무현 이세인 최문수 이윤평 양봉 김항률 원인수 김인송 지축생 현무생 지갑생 오인식 강순봉 강태하 송을생 김창호 이원영 이봉규 박경흠 이자춘 원성춘 김병일 김인호 고기동	
혁화직	1명	강두옥	
잡화직	1명	조인혁	

### 3) 연령별 분류

연령을 공란으로 해 놓은 5명과 연령 미상(不詳)인 사람이 1명이다. 공란인 사람들은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인 김연일, 강창규, 강수오, 정구용, 강민수, 김용충이다. 60대 3명, 50대 9명, 40대 17명, 30대 15명, 20대 14명, 10대 2명이다.

< 표21. 연령별 분류 >

연령대	인원	이름	나이	비고
공란	5명	강창규	공란	체포 안 됨
		강민수	공란	체포 안 됨
		김용충	공란	체포 안 됨
		정구용	공란	체포 안 됨
		강수오	공란	구속 중 사망
미상(不詳)	1명	김연일	미상	
60대	3명	장임호	63세	
		이춘삼	63세	
		강두옥	62세	
50대	9명	김윤석	58세	
		김삼만	55세	
		박주석	55세	
		양남구	55세	
		고용석	52세	
		문남진	52세	
		최문수	52세	
		강봉환	51세	
		원인수	51세	
40대	17명	문남규	49세	
		조인혁	48세	
		김상언	48세	
		김명돈	46세	
		현재천	46세	
		최태우	45세	

		문남은	44세	
		송을생	44세	
		이원영	44세	
		박경흠	44세	
		이자춘	43세	
		최신일	42세	
		강 익	42세	
		지축생	42세	
		김인송	41세	
		이봉규	41세	
		김창호	40세	
30대	15명	김병화	39세	
		이종창	38세	
		오인석	38세	
		김인호	38세	
		조계성	36세	
		강기추	35세	
		강순봉	35세	
		김병일	33세	
		방동화	32세	
		이달생	32세	
		이윤평	32세	
		현무생	32세	
		김무석	31세	
		이세인	30세	
		지갑생	30세	
20대	14명	김항률	29세	
		이승빈	28세	
		양 봉	28세	
		강춘근	27세	
		원성춘	24세	
		오인식	23세	
		오병윤	22세	
		강태하	22세	
		고기동	22세	
		김기수	21세	
		김성수	21세	

		이무현	21세	
		김인수	20세	
		강영준	20세	
10대	2명	한윤옥	16세	
		김두삼	15세	

#### IV. 결 론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형사사건부』는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 접수에서부터 구속 기소되는 과정을 거쳐 공판과 형량을 비롯하여 형 집행 상황, 감형에 이르기까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주소 및 나이를 기록한 문서이다. 법정사 항일운동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그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형사사건부』 양식을 해설하고 용어의 법적 의미를 살피는 것을 통해 일제가 법정사 항일운동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연구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제는 법정사 항일운동을 심각한 시국사안으로 인식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검사분국이 제주도에 설치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청 검사분국과 동급기관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에서 사건 처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목포지청 검사분국에서 “직수(直受)와 인지(認知)”사건으로 처리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경찰의 수사단계를 건너뛰고 목포지청 검사분국이 직접 검찰단계의 수사를 하였다는 뜻이었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생 3일 뒤에 현행범 44명이 목포지청 검사분국에 접수되었다. 이는 국권회복과 일본인 축출을 목표로 내건 법정사 항일운동의 심각성을

인식한 일제가 항일 독립운동의 제주도내의 파급 확산을 우려하였음이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형사사건부』의 법률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여 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본고는 숫자 계산과 표 작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본고에서 분석한 『형사사건부』는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를 보다 쉽게 할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법률적 소양이 없어 의미를 해석해내는 게 조심스러워서 의미 분석을 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법 전문가의 명쾌한 의미해석을 바란다.



## 【 국문초록 】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형사사건부』는 1918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의 기록문서로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66명에 대한 형사재판 기록이다. 『형사사건부』가 일제가 생산한 법정 기록문서라는 점을 주목하고 이를 통해 일제가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상세히 정리하고자 하였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사건부』 양식의 법률적 의미와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에 대한 일제의 사건처리 과정을 살펴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고를 통하여 일제가 법정사 항일운동을 심각한 시국사안으로 인식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우선 일제는 제주도에도 당시에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검사분국이 설치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청 검사분국과 동급기관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에서 사건 처리하였다. 게다가 10월 7일 발생한 사건을 3일 뒤인 10월 10일에 목포지청 검사분국에서 접수하였다. 또한 “직수(直受)와 인지(認知)”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거쳐 검찰로 이송하는 경찰수사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검찰단계의 사건으로 접수하였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바로 국권회복과 일본인 축출을 목표로 내건 법정사 항일운동의 제주도내의 파급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려는 의도였으며 중대한 시국사건으로 인식하였다는 증거임을 이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게 되었다.

## 【 주제어 】

법정사 항일운동, 형사사건부, 국권회복, 항일운동의 법적 처리,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의 형사재판 과정, 직수 사건, 인지 사건, 서귀포 경찰관 주재소 출동, 법정사 항일운동의 제주도내 파급 우려,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의 무거운 형량

【 Abstract 】

**Analysis of the "Criminal Case Documents"  
related to Jeju Beobjeong Temple Anti-Japan Movement in 1918**

Han, Guem-soon

(The doctor's course of the History department, Jeju Univ.)

The Criminal Case Documents related to Jeju Beobjeong Temple Anti-Japan Movement in 1918 is the documents recorded by the branch bureau of Mokpo provincial prosecution office. The criminal trial documents are about 66 Jeju Beobjeong temple anti-Japan movement participants.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criminal case documents were recorded by the Japanese officials, this thesis describes in detail what legal procedures they went through about the anti-Japan movement participants.

This study makes clear the legal meaning of the criminal case documents by tracing the processes through which they dealt with the case about Beobjeong temple anti-Japan movement participants.

This thesis evidently reveals that the Japanese officials recognized the anti-Japan movement as a critical national juncture. The evidences are as follows.

First, the criminal case was undertaken by the branch bureau of Mokpo provincial prosecution office even though there were the Jeju branch bureau of Gwangju provincial prosecution office, which was an equivalent counterpart institute. Second, the criminal case

happened October 7th in 1918, but the branch bureau of Mokpo provincial prosecution office accepted it October 10th, three days later. Last, the case was directly accepted by the prosecution without a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This study clearly shows that the then Japan intended to quickly prevent spreading the Beobjeong temple anti-Japan movement aiming to recover national right and to expel Japanese people throughout the Jeju island and that recognized the criminal case as a critical juncture.

【 Key words 】

Jeju Beobjeong Temple Anti-Japan Movemnet

criminal case documents

recovery of national sovereignty

judicial disposal of anti-Japan movement

the procedures of criminal trial on Beobjeong tmeple anti-Japan movement participants

directly accepted by the prosecution without a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the) prosecution-finding case

the mobilization of the Seogwipo substation police

the worries about spreading of Beobjeong temple anti-Japan movement throughout the Jeju island

heavy sentences on Beobjeong temple anti-Japan movement participants

논문투고일 : '09. 7. 28    심사완료일 : '09. 8. 28    게재확정일 : '09. 9. 18